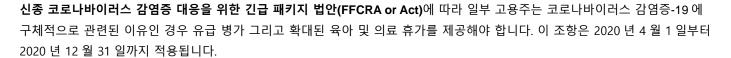
고용인 권리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 패키지 법에 따른 유급 병가 및 육아·의료 휴가 확대



▶ 유급 휴가 권리

이 법안에 해당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고용인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최대 이 주(80 시간 혹은 시간제 고용인의 2 주에 해당하는 시간)의 유급 병가가 정규 임금과 해당 주나 연방 최소 임금 둘 중에서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
- 아래 1~3 번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: 100% 지불하되 하루에 \$511 씩 최대 총 \$5,110
- 아래 4 번과 6 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: 2/3 지급하되 하루에 \$200 씩 최대 총 \$2,000
- 아래 5 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: 최대 12 주의 유급 병가와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를 2/3 지급하되 하루에 \$200 씩 최대 총 \$12,000

시간제 고용인의 경우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잡힌 일정에 따른 근무 시간에 대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.

▶ 자격이 되는 고용인

일반적으로 고용인이 500 명 미만인 민간 부문 고용주와 일부 공공 부문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고용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에 관련된 이유(아래 참고)로 최대 이 주간 전액 혹은 부분적인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회사를 나가기 최소한 30일 전에 일을 했던 고용인도 아래 5 번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 주 동안 유급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▶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에 관련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

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고용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에 관련된 휴가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.

- **1.**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와 관련돼 연방, 주 혹은 지방 정부에 의해 격리나 자가 격리 명령을 받은 경우
- **2.**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와 관련돼 의료전문가로부터 자가 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
- **3.**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증상이 있어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
- **4.** (1)에 기술된 명령을 받거나 (2)에 기술된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경우
- 5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에 관련된 이유로 학교나 탁아 시설이 문을 닫아 (혹은 탁아 시설이 없어)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- **6.** 그 외 미국보건복지부가 명시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

▶집행

미국 노동부 임금시간과(WHD)는 FFCRA 의 준수를 조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FFCRA 에 따라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유급 병가나 확대된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쓰는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징계를 내리거나 차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법에 기초하거나 관련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. FFCRA 조항을 어기는 고용주는 WHD 의 처벌과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.

Employers Group

임금시간과 미국 노동부 추가 정보나 민원 접수:

1-866-487-

9243 TTY: 1-877-889-5627

dol.gov/agencies/whd